

신림선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

2023. 10. 07 기준

1. 여객의 구분 및 기본운임

구분	범위	기본운임	
		교통카드	1회권
일반 (어른)	만 19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사람	1,400원	1,500원
청소년	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·중·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사람 (외국인 포함)	800원	1,500원
어린이	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(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)	500원	500원
유아	만 6세 미만의 사람	운임면제	

2. 운임 계산방법 및 할인율 기준(교통카드 기준)

도시철도만 이용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본운임 : 10km까지 1,400원(1회권은 1,500원) 추가운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~50Km 이내 : 5Km마다 100원씩 추가 50Km 초과 구간 : 8Km마다 100원씩 추가 ※ 수도권 내외구간을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 후 수도권 외 구간(평택~신창, 가평~춘천)은 4Km마다 100원씩 추가
도시철도~버스환승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운임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의 기본운임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광역시, 경기(직행)좌석형 및 인천광역시(좌석) 시내버스 : 30km 기타버스 기본거리 : 10Km 상기 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: 5Km마다 추가운임 합산한 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4회(5회 승차)까지 환승 가능 (하차 후 30분 이내, 21시~익일 07시에는 1시간 이내 승차 시 적용) ※ 동일노선 버스 환승불가, 도시철도 하차 후 다시 도시철도 승차 시 환승불가

※ 조조할인제 : 첫차~06:30까지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% 할인(선·후불 교통카드만 적용되며,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승차 한 경우에는 제외)

3. 정기권의 이용

정기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객이 도시철도구간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전용 : 61,600원(1,400원×44회) 거리비례용: 1~18단계(61,600원~123,400원) 1회 충전 시 30일/60회 이내 사용(정기권 카드 발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유효기간 또는 잔여회수 중 어느 것이라도 도래할 경우 사용만료
-----	--

4. 무임(우대용 교통카드, 우대용 1회권 사용)

노인	•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
장애인	•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
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유공상이자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 부상자, 공상 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5·18민주유공상이자 : 5·18민주유공자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정한 5.18 민주화운동부상자
보훈대상자	•보훈대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1항에 정한 사람

5. 승차권의 사용조건 및 효력

- 1인 1개의 승차권으로 사용(1매 승차권으로 다인 사용불가, 단, 단체권 일부특수권 제외)
- 여행도중 역에서 하차할 수 있으며, 이때 잔여운임은 반환되지 않음.
- 여행도중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차로 간주되며, 새롭게 운임을 지불하여야 함.
- 동일한 역에서 5분 이내 최초승차▶하차▶재승차 시 1회에 한하여 재승차시의 운임면제(단, 환승횟수는 1회 차감)
 - 대상 : 선후불교통카드, 정기권(1회용교통카드 제외)
 - 예외 :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경우 및 여행도중 하차 하였다가 다시 승차하는 경우 제외
- 개표 후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오는 경우 자동개집표기에서 집표처리하며, 개표시 지불된 운임은 반환하지 않음.
-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교통카드 또는 1회권 해당 기본운임 추가 납부

6. 승차권의 반환

-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 불가시 : 해당 승차권 운임 반환 (미승차 확인증 소지 고객의 경우 여행 중지일 포함 14일 이내 청구 시)
- 개표한 후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여 승차하지 못한 경우 운임 반환
- 미사용 승차권 반환
 - 미사용 1회권 또는 미개표 1회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운임반환 청구(1회권 한)

7. 부가금 징수 기준

- 다음의 경우에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(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운임)과 30배의 부가금 징수(직원에게 미리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1회권 운임만 징수)
 -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
 -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
 - 개표불능 사유 외에 승차권을 개표를 받지 않고 승차하였을 때
 - 승차권 검사 시 승차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집표 등 회수 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
 -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 - 여객의 부주의로 1회용 승차권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
 - 승차권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
 -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, 분실 등 사고처리 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
※승차권의 무효

-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-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, 우대용 교통카드,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- 청소년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, 우대용 교통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
-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
-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
- 우대용 1회권, 청소년카드 및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
-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

• 부가금 징수시 세부사항

-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여객은 승차권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
-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
- 여객이 여행 시작 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하지 않음

8. 휴대금지(제한품) 안내

-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 될 때에는 여객의 물건을 확인 할 수 있고, 협조하지 않는 경우 승차를 거절할 수 있음.

구분	종류
위해물품	화약류, 고압가스, 인화성액체, 가연성 물질류, 산화성 물질류, 독물류, 방사성 물질, 부식성 물질, 마취성 물질, 총포·도검류 등 기타 유해물품
위해물품 이외의 휴대금지품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물(애완용 동물의 경우 용기에 넣고 겹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경우는 예외) 불결, 악취 등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전차선 등에 접촉으로 안전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
휴대품 제한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길이,너비,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(휠체어 및 유모차는 예외) 자전거(접이식 자전거를 포함) 및 전동 킥보드 (단,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간주되는 경우 휴대할 수 있음)

9. 여객운송의 거절 또는 퇴거 대상 행위

- 휴대금지품, 휴대제한품 및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행위
- 역사 및 열차 내 비상정지버튼·승강용 출입문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
- 승강장안전문이나 열차 출입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승하차하거나 이물질 등을 넣는 행위
- 여객의 행동, 나이 또는 정신적·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
-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
-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차권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
-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판매, 연설,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
-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
-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 도중에 내리거나 고의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-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흡연, 광고물 부착 또는 배포, 산업폐기물·생활폐기물 또는 오물 등을 버리는 행위
-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·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
-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

10. 사고 등으로 지연증명서(간편 지연증명서) 발급

-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**20분 이상 지연**되었을 때는 지연증명서를 여객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내 홈페이지에서 발급.
- 차량고장 등 열차가 **5분 이상 지연**시는 간편 지연증명서를 신림선도시철도 홈페이지에서 발급되며 개별 출력가능.